

**YU the Future**

미래를 만드는 대학

IP기반 창조경제 실현



[컨소시엄형]  
2013년도 성과와  
우수사례/프로그램 발표

2014.04.24(목)

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

## Contents

I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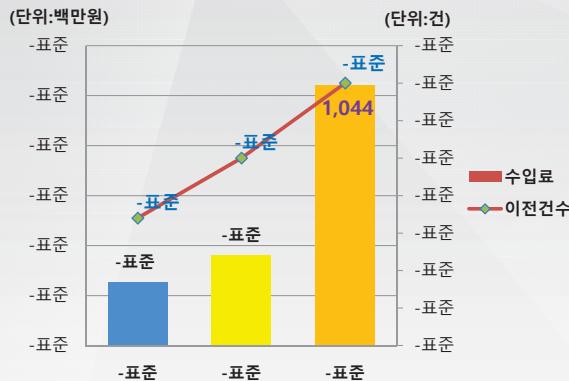
II 사업 추진 역량

III 사업 추진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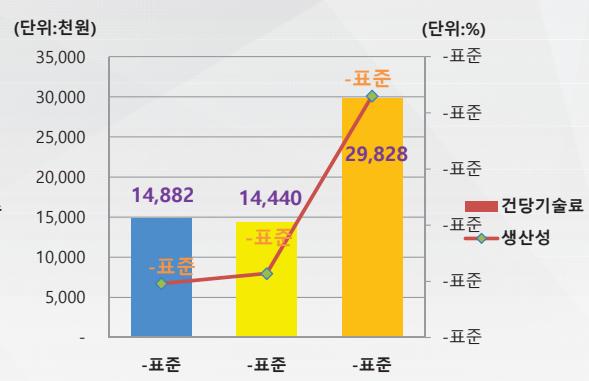


## 1. 기술 사업화 실적

### 1) 기술이전 수입료



-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수입료 합계 : 1,658백만원
-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성장률 : 313%
- 최근 3년간 기술건수 성장률 : 106%
- NTB 등록 : 104건 등록/121건(8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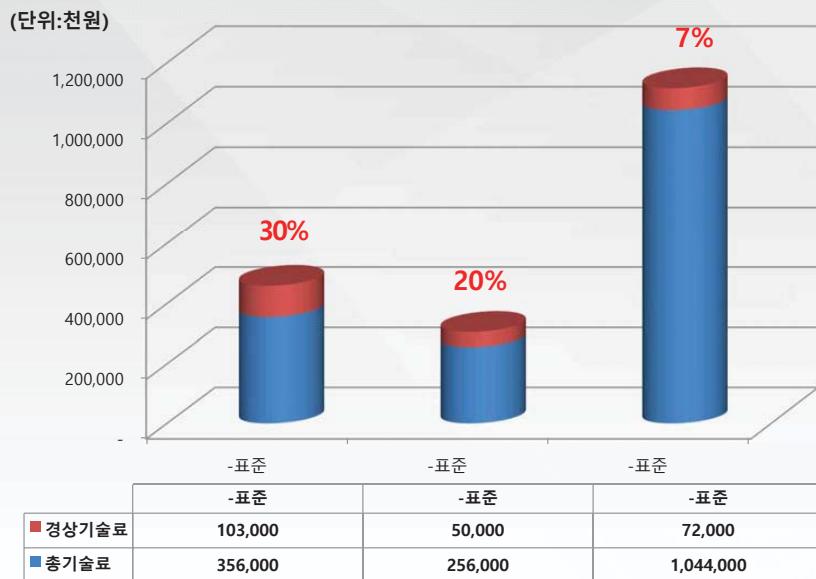


- 최근 3년간 생산성 : 0.48% ↗ 2.15%(4배 이상 상승)
- 최근 3년간 건당 기술료(2배 상승)
  - 2011년 : 14,882천원
  - 2012년 : 14,440천원
  - 2013년 : 29,828천원
- 경상기술료 비율
  - 2011년 : 40.6%
  - 2012년 : 13.8%
  - 2013년 : 7%

1

## 1. 기술 사업화 실적

### 2) 경상기술료 비중



2

# 1. 기술 사업화 실적

## 3) 경상기술료 징수 주요 계약 사례 I

### 제1조 [기술제공 대가 및 지급 방법]

‘율’은 등기기술 실시관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‘갑’에게 지급한다.

#### 1. 기술료

① 정액 기술료 :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경상 기술료 : 총 매출액의 3%를 의연 2월 말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.

2. 기술이전 실시기간 : 2009년 2월 1일 ~ 2019년 1월 31일 (10년)



### 제6조 [정산 및 보고]

① 경상기술료의 정산은 매년 1회로 하며 ‘율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술료를 의연도 2월 28일한 ‘갑’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만료년도에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그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‘갑’의 주거지 시장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기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.

② 전 1항의 기술료 확인을 위하여 ‘율’은 계약/납입한 제품의 납입선, 납입년월일, 종류, 물량 및 기술료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공정, 탄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등 공인된 기술로 산출근거를 의연도 2월말까지 ‘갑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만료년도에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‘갑’은 필요에 따라 ‘율’에게 전 2항의 관련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, 담당직원 및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기술료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 위촉된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는 판매수익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 근무시간 중에 ‘율’의 필요한 일정을 알람할 수 있으며, ‘율’은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전 3항에 의거 위촉된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와 2항에 의해 제출된 실시보고서 및 증빙서류가 하위이거나 ‘율’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‘율’은 그 차액을 즉시 ‘갑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또한 ‘율’은 ‘갑’의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 위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
⑥ 사업재산권 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등록거절, 등록무효, 취소 기타 권리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시점으로 기 지급된 기술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

3

YU 영남대학교

# 1. 기술 사업화 실적

## 4) 경상기술료 징수 주요 계약 사례II

### 제2조(특허권의 표시)

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특허등록번호 : \_\_\_\_\_

발명의 명칭 : \_\_\_\_\_

### 제3조(계약기간 및 범위)

1항 :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특허권 만료일까지로 한다.

2항 : 본 계약의 유효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한다. ‘율’과 ‘병’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본 특허 및 본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‘갑’과 협의하여 본 특허의 해외출원을 실행할 수 있고, 이에 대한 비용은 ‘율’과 ‘병’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3항 : 본 특허와 본 신기술의 사용범위는 수처리 사업 전반에 적용된다.

5항 : 기술료 확인을 위하여 ‘율’과 ‘병’은 원 발주처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및 견적서, 특히 및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통의 금액 근거자료 등을 ‘갑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6항 : ‘갑’은 필요에 따라 ‘율’과 ‘병’에게 관련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, 담당직원 및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기술료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검증할 수 있다.

7항 : 위촉된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는 자료 검증 등을 위하여 통상 근무시간 중에 ‘율’과 ‘병’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‘율’과 ‘병’은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의

- 3 -

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8항 : 위촉된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검증 결과, 제출된 자료 또는 증명자료가 하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, ‘율’과 ‘병’은 그 차액을 즉시 ‘갑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‘율’과 ‘병’은 ‘갑’의 담당직원 및 공인회계사 위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대가의 불반환)

1항 : ‘율’과 ‘병’이 본 계약에 따라 ‘갑’에게 지급한 기술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2항 : ‘갑’은 ‘율’과 ‘병’의 특허권의 실시가 제3자의 권리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.

### 제9조(기술료)

1항 : ‘율’과 ‘병’은 본 계약의 대가로 ‘갑’에게 다음과 같은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2 -

1. 정액기술료 : 해당 없음

2. 경상기술료 :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‘갑’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- 본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특허양수도합약서(2009.12.01)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지급한다. 단, 공사 단위별 공사는 본 특허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의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 ‘율’과 ‘병’은 본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, 수주한 공사에 대한 기술료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‘갑’에게 납부하여야 하며, 본 계약 체결되기 전에 공사계약 및 공사진행이 된 것은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정산을 실시하되 이에 대한 지체상금은 제외한다.

- 본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기술료를 산정한다.

● 기술료 = 공사 단위별 공사비 X 특허지분(40%) X 요율(하기 표)

종 공사비 (단위: 억원)	10	50	100	150	200	300	400	500	1,000
요율(%)	3.0	2.7	2.5	2.3	2.0	1.8	1.7	1.6	1.5

\* ‘갑’·‘단위별·‘공사비는‘건설·‘공사의‘총·‘내재·‘증·‘불·‘복합· 및·‘본·‘진·‘기술이 적용되는 공공의 순공사비를 지정하는 것이며, 특허지분은 공사 단위별 공사비에서 마이크로버스모듈과 액막화행크가 차지하는 금액 비율(40%)을 의미한다.

2항 : 해당공사의 경우에는‘국가별’기술료 인정 기준과 상례가 다르므로, 사업수행 건별로 ‘갑’과 대표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.

3항 : 경상기술료의 정산은 공사 단위별로 하여, ‘율’과 ‘병’이 공사를 수주한 후 원 발주처로부터 선금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기술료와 공사선금금 또는 기성금의 수령비율에 따라 ‘갑’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‘율’과 ‘병’은 공사 수주금액 및 기성금 수령일자를 근거자료와 함께 ‘갑’에게 통보한다.

4항 : ‘율’과 ‘병’이 경상기술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그 당시의 ‘갑’의 주거지 금융기관 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자율하여야 한다.

YU 영남대학교

4

## 2. 사업 추진 역량

## 1) 조직도

- ▶ 전담인력 수 : 4명
  - ▶ 전체 예산 : 약 10억원
  - ▶ 기술거래사 : 1명
  - ▶ 자체 예산 : 3억 5천만원(35%)
  - ▶ 변리사 : 1명
  - ▶ 전문가 비율 : 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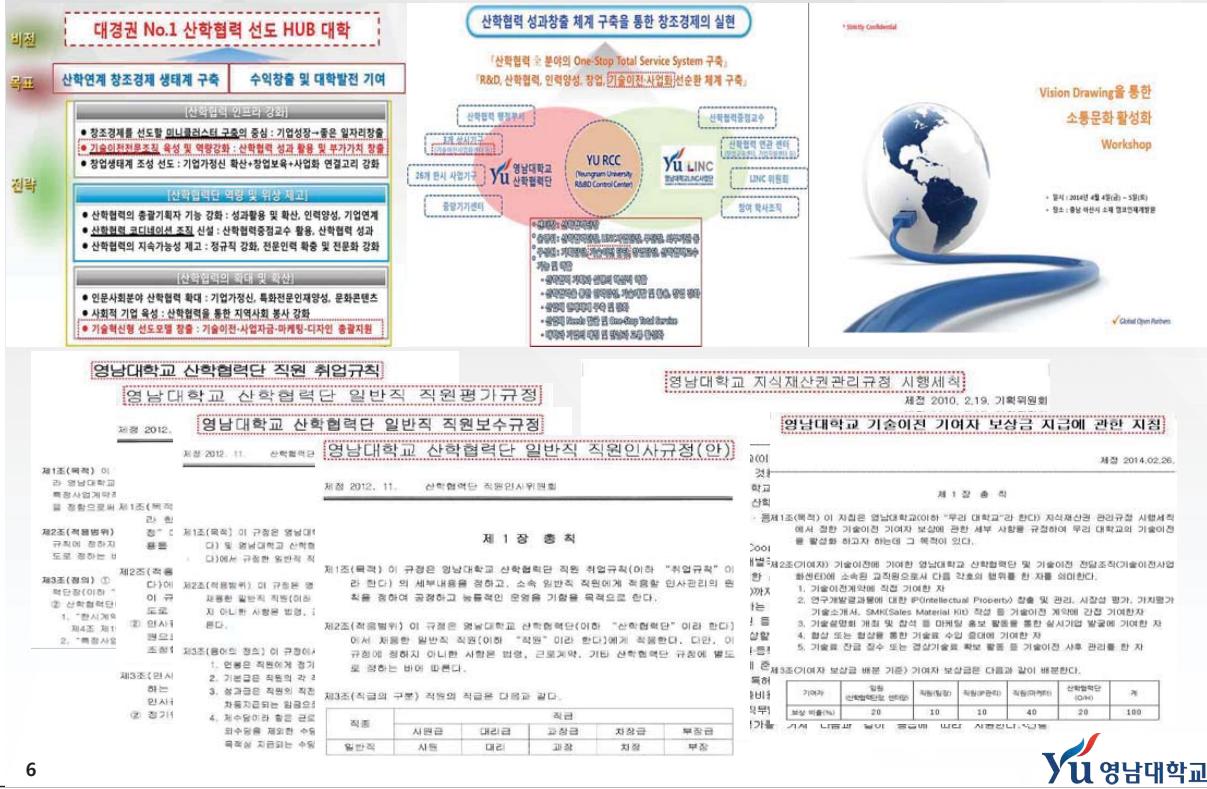


5

YNU 영남대학교

## 2. 사업 추진 역량

## 2) 총괄책임자 조직운영 활성화



## 2. 사업 추진 역량

### 3) 자체재원 및 관련 규정, 시스템 현황

**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**

제정 2010. 2.23. 교무위원회  
개정 2012. 9.18. 교무위원회

**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시행세칙**

제정 2010. 2.19. 기획위원회  
개정 2011. 7.27. 기획위원회

**영남대학교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**

제정 2014.02.26.  
2012.10.24. >

**제1조(목)**  
이하 1조(목적) 이 세칙  
발 **필요한 세부사**  
**장 제2조(언어범위) 이** \_\_\_\_\_  
**다. 제3조(총원율률 비율**  
**제2조(문)** **관한 국내 차:**  
1. \_\_\_\_\_  
① 산학협력단은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시행세칙  
권의 개별국가  
에서 절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대학교의 기술이전  
2. ④ 고지원 등이 \_\_\_\_\_  
국내외 \_\_\_\_\_ 해외  
직원 등이 연구제2조(기여자) 기술이전에 기여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(기술이전사업  
④ 연구교재를 수  
화센터)에 소속된 고작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.  
권 출원등록비  
1. 기술이전계약에 직접 기여한 자  
한다. 다만, 지  
연구개발과에 대한 IP(Intellectual Property) 창출 및 권리, 시장성 평가, 가치평가  
하지 않을 시에  
기술소개서, SMK(Sales Material Kit) 작성 등 기술이전 계약에 간접 기여한자  
⑤ 품목과 직무  
3. 기술설명문, 개발 및 청탁 등 마케팅 홍보 활용을 통한 상시사업 발굴에 기여한 자  
산학협력단  
⑥ 산학협력단은  
4. 협상 또는 협상을 통한 기술로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 
5. 기술료 잡금 징수 또는 결산기술료 확보 활동 등 기술이전 사후 관리를 한 자  
소 및 외부:  
2012.10.24. > 제3조(기여자 보상금 배분 기준) 기여자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.

기여자	임원 (전체임원은 선택권)	직원(팀장)	직원(P교수)	직원(마케팅)	산학협력단 (D/H)	계
보상 비율(%)	20	10	10	40	20	100

7

### 3. 사업 추진 실적

## 1) 우수 사례

우수 IP 발굴 및 마케팅

- PCT 출원 대상 전 중심 자체 선별
  - 연구자미팅을 통한 기술완성도 확인
  - 타겟마케팅(LINC) 수행
  - 해외기업 1곳, 국내기업 8곳

기술이전 계약 체결

- 2013.12. 기술이전 계약 체결
  - 정액 3억(선급 2억) + 경상 1/15%
  - 기술사업화 수행

사업화 지원(GT<sup>2</sup>)

-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 연계
  - 추가R&D 자금 3.4억 수주
  -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양산 개시 예정
  - 정부 R&D 특허전환지원사업 수주 연계

### 3. 사업 추진 실적

#### 2) 기술이전·사업화 프로그램의 우수성



9



기술이전사업화센터는  
지식재산경영 체계 구축으로  
IP기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 
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